

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「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」 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개정내용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·예규 등의 존속 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

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. 보칙

5.1 재검토기한

- (1)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5. 보칙</p> <p>5.1 재검토기한</p> <p>(1)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